

## On-Line 중재 상담실



### 악속과 달랐던 인터뷰 보도 내용

얼마 전, 성추행 사건으로 방송국에 글을 올렸고 보도하기로 한 날 오후에 방송국 기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때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를 해드렸습니다. 인터뷰 내내 저는 목소리, 옷, 뒷모습 등 절대 아무것도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고, 그 분들은 자신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조서서를 작성하느라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로부터 오늘 방송뉴스에서 절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말로는 뒷모습, 습관적인 제스처, 목소리, 말투 등이 '분명히' 저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니 정말 하나도 악속을 지키지 않으셨더군요. 기자분에게 좋게 말씀을 드려 해당 내용을 지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에 인터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기자 분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끝에야 인터넷에서 동영상도 사라졌습니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로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모습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방송으로서 이에 대한 구제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축제에 관한 기사 정정보도

저는 2006년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축제 참석하였던 유○○입니다. 몇 개월간의 치밀한 준비와 홍보 덕분에 많은 홍보와 소득을 거두는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다음날, 지방지 몇 군데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등, 축제가 정치인들의 홍보장으로 변했다는 등 우리 월등면민들에게는 치명적인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좀 더 품질 좋은 복숭아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월등면민들의 지를 꺾어버린 기사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기고했던 기자님들께서 순천의 명품 월등 복숭아가 전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이번 행사가 얼마나 성대하게 잘 치러졌는지도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쓴, 축제가 엉망이라는 기사 때문에 월등면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축제를 개최한 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조정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2006. 7. 28 이전의 보도라면 1월), 보도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조정신청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해당 보도내용을 준비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Q 사회부 기자의 인권 침해

인터넷 신문 '0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O'씨라는 특이한 성씨의 소유자임에도 피해자의 거주지('경기도 00시 00구')와 나이까지 꽤 자세히 소개된바,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A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산하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어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000는 뉴스통신으로서 그 보도내용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의팀에서는 해당 보도내용을 시정권고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 기준과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Q 언론중재법에 관한 질문

이번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간행물 뿐 아니라 방송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세 가지 매체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차이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심의팀입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대해 자체심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년 7월 28일 시행)에 따르면 시정권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됩니다.

### 1. 심의대상 매체의 확대

현재 심의대상 매체는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으로 되어 있으나 새 법에 따르면 전체 언론사로 범위가 확대되어 인터넷신문, 방송까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2. 제3자도 시정권고 신청가능

현재 자체심의만 하고 있으나 새 법에 따르면 피해자 및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3.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법익 명시

현재 법상으로는 침해사항을 심의한다고만 되어 있으나 새 법에 따르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법익을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타인의 법익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심의대상 매체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나 효력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 Q 이런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당시 취재진에게 아파트 단지배경 및 본인에 대한 인터뷰는 허락하였으나 본인의 초상이 방영되는 TV 뉴스 방송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아파트 이름은 나오지 않고 건물과 주변 배경만 방송됨). 물론 취재진은 피의자 다루듯 신분과 방영시간대만 고지해주었고요. 또한 저간의 사정은 무시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취재진의 일방적 결론으로 본인이 탈법·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본인의 초상을 위주로 방송하면서 무관한 다른 지역의 유사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저와 단지 주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지요? 취재기자 및 보도방송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소할 수 있는지요?

A 상대방의 주장과 취재진의 일방적 결론으로 신청인이 탈법,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려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2005. 7. 28. 이전의 보도라면 1월), 보도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방송의 경우 보도내용으로 녹취록과 방송테이프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